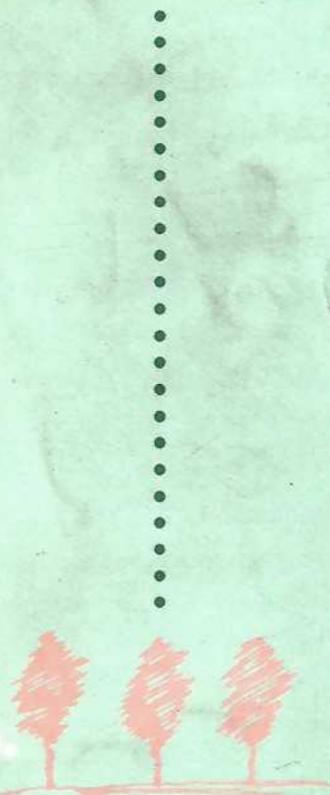


인권학술소식

합본 III 호
(제201~300호)



1995. 4

인천을동사랑방

인권학술소식
합본 III 호 1995. 4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천을동사랑방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201호 - 300호)

1995. 3.

인권운동 사랑방

‘전자계산통신망’ 시대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김 진 균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권소식이 날마다 전자통신망을 타고 배부된다는 것은 인권신장을 위한 정보·지식 전선이 확대되고 신속하게 된다는 시대적 전환을 반영한다. 전자계산통신망은 한편으로 막대한 자본의 투자에 의한 과학기술혁명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안팎 자본과 국가의 권력층이 더 넓게 연계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배력을 장악하고 확대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서로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회마다 국가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쉽게 멀리 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권상황’도 따라서 널리 인지하고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있는 사람들이 집회와 농성, 가두행진이나 시위를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도 개최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왔는데, 또한 전자통신망시대에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고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산통신망 시대에는 그 통신망 자체가 항의를 하고 여론도 일으키기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광장으로 변모될 수 있기에, 민민운동권도 그러한 전자계산통신망에 광장을 만들고 확보하여 쓸모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를 검색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양되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은 그러한 광장을 만들어나가는 초보단계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권의 문제는 신민(臣民)으로서의 백성, 공화국의 시민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민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시민의 개념으로 포괄되면서 제기되었던 것인데, ‘정치적인 자유권’은 그렇게 간단한 표어가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새로운 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때 정치적인 기본권은 처음에 부르조아 계급에게 독점적으로 향유되었으며, 새롭게 생성하는 노동자 계급이나 농민과 같은 기층민중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포함하는 만큼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배제·소외되었으며,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면서부터 그 기본권을 쟁취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전개에 따라 기본권을 향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층이 넓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주부에게는 사회적으로 배려를 할 할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으로 확대 적용되어 갔던 것이다.

근대민족국가 형태에서는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계급·계층간의 갈등이 정치적 자유권을 동력이었는데, 한편으로 근대민족국가의 성원인 ‘국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치적 기본권은 차별있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국적 차이에 의한 차별은

인종, 종족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는 문제와 겹쳐 있었다(이것은 한편으로 식민주의를 낳았고,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차취함으로써 나라 안의 사람들이 부와 기본권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휴머니즘을 주창하면서도 외국인, 식민지 국민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을 외면하는 근거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인종차별주의가 발전하는 소지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족(또는 인종) 차별문제로서는 일제 식민주의에 의하여 억압받은 문제와 해외 교민들이 인종적, 민족적 차별을 받는 문제가 항상 부각되어 왔다. 그래서 민족차원에서 다른 민족에 의하여 받는 억압의 문제를 ‘자주’의 맥락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 인종의 사람들이 육체적 노동자나 숙련노동자로 취업하는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도 하층 노동자로서 국내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차별받는 문제로부터 차별하지 않는, 더 나아가 그들의 기본권도 함께 신장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적 기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새롭게 제기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게끔 되어 있다. 우리는 민족분단과 장기적인 군부 파시스트 정권 지배에서 비롯된 온갖 인권탄압이 있었고,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이나, 악법조항이 민주적인 것으로, 또한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체험하듯이 정치권 기본권의 확대와 확보는 기층민중, 국민 대다수의 민주적 역량의 제고 및 그 조직화에 의한 남북한 민족이 동일한 차원의 기본권 확대 선상에서 전망되어 통일에 대비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인권과 기본권 문제에 대한 운동 핵심에 와 있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전망하고 해결해내야 할 민족들에게 빛을 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우리만큼 가장 활발히 민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이 더욱 발전하여 인권 문제와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와 성격을 미리 색출하고 검토하고 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기를 희망한다. 인권의 문제는, 즉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는 항상 지배 이데올로기의 중심에서 다투는 문제이다. 여러 역량과 연대해서 매진하기를 기원한다.

단기 4327년 그믐달

머리글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정 인 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교수

1. 머리에

20세기 후반은 인권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권의 국내적, 국제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제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는 UN 역시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 달성”을 창설 목적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제1조). 이에 UN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조약화하는 국제인권조약을 1966년 채택한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은 오늘날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불리운다. 국제사회는 이 이외에도 개별분야에서 보다 세분화된 인권조약을 적지 않게 탄생시켰다. 이번에 한국이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중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약에는 대부분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인권조약 가입과정이나 이후의 국내실천상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2. 국내 실천상의 문제점

가. 정부측의 문제점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원활히 실천될 수 있는가 여부는 1차적 관건으로 정부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만이 인권조약의 가입을 결정할 수 있고, 가입 이후의 국내적 실천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결코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첫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소극적 가입 태도이다.

과거 한국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마지못해 가입한다는 매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이 가입하는 경우 예외없이 당해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에 서명 및 비준을 하였으며, 유일한 예외는 1950년에 비준한

제노사이드조약뿐이었다(1948년 12월 7일 채택, 1950년 10월 14일 한국 비준, 1951년 1월 12일 발효).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발전에 적극적 기여를 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기보다는, 조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 여론에 이끌려 불가피하게 가입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회피적 태도는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기간동안 가장 심하였다. 당시 국내 인권상황이 자주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상기하여 볼 때 정부내 실무적 차원에서 가입 추진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채택일	발효일	한국 비준일
국제인권규약 A	66.12.16	76. 1. 3	90. 4.10
국제인권규약 B	66.12.16	76. 3.23	90. 4.10
동선택의정서	66.12.16	76. 3.23	90. 4.10
동사형폐지협정서	89.11.20	90. 9. 2	미비준
난민조약	51. 7.28	54. 4.22	92.12. 3
동의정서	67. 1.31	67.10. 4	92.12. 3
무국적자조약	54. 9.28	60. 6. 6	62. 8.22
여성차별철폐조약	79.12.18	81. 9. 3	84.12.17
아동권리조약	89.11.20	90. 9. 2	91.11.20
고문방지조약	84.12.10	87. 6.26	94.12.
인종차별철폐조약	66. 3. 7	69. 1. 4	78. 8. 8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가입 태도를 예시하는 또 다른 증거는 조약 가입시 국내법과 충돌된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모두 유보하여서 가입하여 왔다는 점이다. 인권조약 가입의 의의는 조약 가입을 계기로 국내인권상황을 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은 국내법이 조약상의 의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항상 개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유보를 하고 조약에 가입하여 왔다. 난민조약 가입 이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예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국내 실체법상 난민의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절차에 있어서 난민에 관한 특칙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였다. 인권관계조약의 가입에 있어서는 서구 선진국 역시 적지 않은 유보하에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법상의 후진성이 더욱 심한 한국이 항상 국내법의 개정이 없는 가입만을 하여 왔다는 점은 인권조약을 계기로 국내인권상황을 좀 더 개선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입하였다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단지 조약 가입국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입하여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될 사항은 불충분한 준비과정이다. 인권관계조약은 외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특히 조약 내용과 국내법 간의 충돌 여부를 조사한 후 그 대책을 마련하고 가입한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이 과정이 매우 소홀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1차적으로 외무부에서 관련 각 부처에 조약 내용을 통지하고 담당업무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문제점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데 이를 요청받은 부서가 매우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조약 가입 여부는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형식적인 검토마저 게을리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무성의에서만 온다기보다는 평소 대외업무가 적은 정부부처의 경우 담당자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조약과 국내법 사이의 명백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주무부서는 이상 없다고 답하는 예나 조약 적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예가 가끔 있다. 또한 동일한 조약을 두고도 실무 담당자가 바뀌게 될 때마다 국내법 해석이 달라져 부처 의견이 변경되는 예도 있었다. 조약 가입후에 직접 그 내용의 국내적 실천을 담당하여야 할 주무부처가 무의한 태도로 임한다면 외무부 자체만으로는 관련 국내법을 망라한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개별인권조약 가입시 국내법과 충돌된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내용조차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의 내용이 그러한 예이다.

조약 내용

3년 이상 거주자 입법상 상호주의적 규제면제	난민조약 제7조는 유보	무국적자조약 제7조는 유보안함
상소권 보장	아동권리조약 제40조 2항 나호(5)는 유보	국제인권규약(B) 제14조 5항 당초 유보 현재 해제
국적법상의 남녀평등	여성차별철폐조약 제9조는 유보	국제인권규약(B) 제2조 남녀평등원칙 위반 및 제23조3항 위반 야기 의 현행 국적법 불유보

그런데 국제인권조약 가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유보조항 보다도 실제 조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모순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때로는 가입 당시 일선 실무진은 그러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유보는 국내외 여론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국내 법과 모순 없음”으로 결론내려지기도 한다. 현재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과 국내법 간의 추가적 충돌조항에 대하여는 필자가 다른 기회에 여러 차례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 그 내용을 열거하지는 않는다.

세계, 적극적 실천의지의 부재이다.

인권조약에는 즉각적인 실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과 아울러 중장기간의 계획을 통한 실천목표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도 많다. 이는 특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인 경우에 많다. 따라서 인권조약에 가입하는 진정한 의의는 점진적 실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도 국가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뒷받침하에 조약상의 목표를 실현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그러한 목표달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여성차별철폐 협약 가입을 계기로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인문제추진기획본부를 설치하여 조약 실천 추진기구의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은 특정인권조약 가입을 계기로 조약 실천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약 실천을 담당할 위원회나 단체를 설치한 예가 없었다. 조약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상적인 정부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실천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조약 가입을 계기로 그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인권조약이 국내에서 널리 실천되기 위해서는 조약 내용이 국민에게 폭넓게 홍보되어야만 한다. 이에 일부 조약은 조약 홍보를 당사국에 대한 주요 실천의무로 부과하고 있다(아동권리조약 제42조, 고문방지조약 제10조 등). 그러나 과거 한국이 특정인권조약에 가입한 후 그 내용의 국내보급을 위하여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예는 없었다. 조약 내용은 대개 통상의 법전에는 수록되지 않으므로 국제인권법에 관심이 있는 극히 일부의 식자층만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어떠한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민간측의 문제점

이상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을 비판하였으나, 그에 관한 책임의 일정부분은 민간측에도 돌려져야 한다. 오늘날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그 탄생과정에서부터 각국의 민간단체가 중요한 배후 추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약 성립 이후에도 조약내용의 보급과 실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자로서 또는 감시자로서 기여를 하고 있다. 아동권리조약의 경우 약 30여개의 NGO의 활약과 압력이 초기의 부진하였던 제정과정에도 불구하고 조약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약성립 이후에도 UNICEF와 더불어 수많은 NGO의 활동이 단시 간내에 이 협약을 국제사회 최대 당사국을 갖는 인권조약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현상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제인권조약 실천에 있어서 민간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인권조약 가입이 추진되는 경우 과거 국내에서는 정부와는 별도로 가입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문제가 민간차원에서 연구되고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하였다. 고작 정부가 제시하는 유보조항을 줄이라는 원론적 비판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정부가 유보대상으로 지적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추가적 유보나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포괄적 의견 제시가 거의 없었다.

일단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민간차원에서 그 조약의 활용이 매우 미미하였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1선 실천자인 변호사의 경우도 국제인권조약 내용에 대한 숙지도는 비교적 낮으며, 따라서 국내 재판과정 등에서 국제인권조약이 법 규범으로 활용되는 예는 거의 찾기 어렵다.

법조인 외의 여타의 민간부분에서의 활동도 저조하다. 예를 들어 여성차별철폐조약 가입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국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구성된다거나, 아동권리조약 가입을 계기로 국내 아동권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약의 국내이행 감시, 독자적 행동계획 제시, 피해사례의 수집 및 구제지원, 정기적 백서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면 정부의 조약 실천의지에 대한 자극도 되고 인권조약의 국내보급 및 실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와 같은 민간활동이 미미한 형편이다. 아동권리조약의 경우 UNICEF가 관련교사 및 실무담당자 워크샵, 강연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을 뿐이다. 별도의 위원회나 단체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련 국내단체가 조약의 국내적 실천을 모니터하고 조약의 홍보에 노력하는 예도 미미하였다.

한편 여러 인권조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16조, B규약 제40조,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8조, 아동권리조약 제44조 등). 조약상의 담당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한된 숫자의 위원이 단기간내에 많은 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각 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국가내 민간기구가 나름대로 다른 시각에서 작성한 반박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매우 유용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국내적으로도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보고서 작성 자세를 신중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1991년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민간차원의 반박보고서가 제출되었던 예 이외에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용으로도 반박보고서가 발표된 바 없다. 이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도가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94년 정부의 A규약 최초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올해에는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 아동조약에 대해서도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 회의'가 구성되어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중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민간차원의 낮은 관심도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소극적 가입추진, 불충분한 국내법 정비, 가입 후 정부의 실천의지 부재를 방치하여 왔다.

3. 제안

국제인권조약이 가입만하고 사장되는 조약이 아니고, 국내 인권상황 개선의 실질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조약 내용의 적극적 홍보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약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는 조약 내용의 국내 보급이므로 현재와 같이 일반인이 조약문을 한번 보고 싶어도 도대체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권조약의 내용이 제대로 실천될 수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수요가 적다는 이유에서 국제인권조약집 하나 발간 된 바 없다. 인권조약 내용의 보급을 위하여 정부는 조약 가입시마다 체계적 국내홍보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홍보책자를 발간 하여 보급하는 한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문방지조약은 가입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조약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도 삽입되어 학교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고양이 인간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교육은 단지 개개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목적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러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피부색, 인종, 국적,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조약 내용의 보급은 정부에만 맡겨질 일이 아니며, 조약 가입시마다 관련민간단체 역시 조약 홍보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인권조약 가입시 중장기적 실천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행동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 임무의 1차적 담당자는 정부가 되어야 하나, 민간측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실천계획을 제시하며 정부의 실천의지를 드러하여야 한다.

세째, 정부내에서는 물론 민간측에서도 국제인권조약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더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허술한 가입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내는 물론 민간인 전문가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네째, 조약 가입 이후에는 관련 국내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시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측에서 각 조약별 실천감시기구를 결성하여 관련 국내법 검토, 국내 위반 사례의 수집 및 보고, 관련 국제동향 소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종합한

정기적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

끝으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인권조약이 있는 경우 정부는 적극적 가입자세를 갖고 임할 것이며, 현재 미가입중인 일부 인권조약에 대하여도 가입 추진이 요망된다. 예를 들어 1926년 노예 조약 및 1953년 동의정서, 1968년 전범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 1973년 흑백분리범죄 억제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85년 스포츠에서의 흑백분리정책금지협약 등은 한국이 외면할 필요가 없는 조약이라고 판단된다.(1994. 12. 11)

한국의 인권, 1994년

-신공안정국과 주사파 파동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사랑방

1. 1994년 한국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조건

1994년 한국의 인권상황을 가장 밑바닥에서 규정하는 세계사적 조건은 두가지 큰 흐름의 충돌이다. 두가지 큰 흐름이란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지구적인 규모로 거역할 수 없이 진행되는 ‘민주화’ 혹은 ‘개혁’의 큰 흐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가 동유럽의 파탄에 따른 미국에 의한 새로운 세계지배질서의 돌입이라는 형태로 완성됨으로써 생기는 총체적 보수회귀 또는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의미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운동·민권운동의 바람이 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용도폐기’ 되어간 군사정권을 대신하는 ‘민간’ 정권들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들 ‘민간’ 정권들은 많은 경우 과거와의 깨끗한 단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제전략상 필요 때문에 탄생하는 만큼 정도에 차이는 있어도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의 충직한 부하노릇을 했던 반공군사정권의 기득권층과 ‘대화해’를 이루면서,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함으로써만이 존립이 가능한 ‘문민적’ 정권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민간’ 정권이 과거의 극단적인 양극화체제 정리를 의미하는 ‘민주화’와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것은 어차피 철저한 것일 수는 없고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 범위의 과거청산, 과거에 무시되었던 일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 정도가 그 내용이다. 따라서 이 ‘민주화’와 ‘개혁’은 당연히 그간의 민주화운동 성과를 수호·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중세력과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이 갈등은 이제 과거와 같이 침예한, 때로는 폭발적인 갈등이 아니다. 동유럽의 파탄 그리고 어쨌든 ‘민주화’를 추진하는 ‘민간’정권 아래 급진적 반체제운동은 힘을 잃어가고 대중적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충격적인 기폭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질서 아래 ‘하나’가 되는 세계는 총체적 보수회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노력은 일부에서 과거 ‘개발독재’의 망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억압적인 노동법이나 공안법 또는 공안경찰제도는 약간 완화된 형태로 여전히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다. 냉

전질서 붕괴의 결과, 그리고 ‘국제화’의 결과 어쨌든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민주화’는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될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당장은 “민주화의 실종”, “개혁의 정체”라는 아우성이, 때로는 진정한 민주사회는 다시 멀어져갔다는 쓰디쓴 체념을 씹으면서, 때로는 새로운 민주화투쟁에의 다짐을 품으며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세계사적 조건이다.

2. 실종된 ‘문민’정권의 ‘민주화’와 ‘개혁’

한국의 인권상황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사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면서도 분명 한국 고유의 시대적 조건으로 채색된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고 있는 동유럽(북한)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온다. 해방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사회주의 북한과의 평화적 조국통일이라는 대과제를 안고 있는 1994년의 한국은 격동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떠밀려 가면서도 여전히 양극적인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고유의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즉 ‘문민’ 정부가 출현하고 나름의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냉전수구세력은 일단 소외되고 위축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뿌리를 가지고 실지전~~한~~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그나마 뚜렷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문민적 개혁’ 마저도 최대한 거부하면서 때로 정국 전반에 걸쳐 매우 위험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아직도 스스로의 체험으로서 간직한 민중세력은 총체적 보수화의 조류에 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건전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분출시킬 힘을 잃어버렸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영삼정권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문민’정권 1년에 대한 평가로 각계가 요란했던 작년에 비해 ‘문민’ 2년이 지난 올해는 거의 누구도 새삼스러운 평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전히 기회 있을 때마다 ‘문민’과 ‘개혁’을 강조하나 그 외침은 공허하다. 곳곳에서 ‘개혁의 정체(정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이며 국민들은 작년의 대우기전과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과 이른바 ‘신공안정국’을 목도하면서 ‘문민’이라는 말도 ‘개혁’이라는 말도 잊어버린 듯 살아간다. 확실히 집권초기의 언어의 마술은 약발을 잊고 ‘문민’의 빛은 바랬다.

김영삼정권이 ‘문민’ 광파르를 불면서 야단스럽게 출범했을 때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기대했다.

- ① 과거에 발생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권문제 청산
- ② 인권을 유린하는 여러가지 법제도의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 ③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지 계몽

그러나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으며, 1994년의 한국 인권운동가들은 우리의 인권상황이 과거 군사정권시절로 되돌아가는 일을 막는 데 최대한의 힘을 쏟아야 할 형편이었다.

3. 1994년 한국의 자화상

(1) 1994년 인권상황 개괄

94년 맨 먼저 떠오른 인권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1월 13일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농성(약 3주간)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 일로 해서 정부는 형식적이나마 지난 3년간의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력송출회사들을 거느리고 진행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로 작년 한해동안 2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기술 명목으로 입국을 하였지만, 이들 중 1천7백명이 탈출하였다. 그들은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 감시와 강제노동, 여권의 압류, 임금의 미지급 등 인간 이하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은 95년 1월에 들어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여 국내 노동자와의 동등한 대우라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들의 처지는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제한적인 개혁에도 밀리고 있던 보수세력이 93년 말부터 보수언론에 폭로되던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로 다시금 기를 얻기 시작했던 것이 지난해의 상반기였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북한의 벌목공에서 탈출한 이들의 중언을 중심으로 부풀리기를 진행했다. 보수세력으로서는 뜻밖의 원군을 만난 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진군가를 열심히 불어댔다. 지난해처럼 북한의 인권문제가 단일한 헛이슈로 되기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현지취재기는 벌목공 문제를 일거에 잠재웠다. 하지만, 북한 벌목공의 문제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전주곡이었다. 잠시 주춤했던 북한 인권문제는 7월 30일 앰네스티가 기자회견하면서 내놓은 자료중 북한정치범 49명 중 고상문씨의 이름이 발견되고부터이다. 다시금 북미핵협상을 파탄시키려는 보수세력의 대공세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에 대한 믿기 어려운 보도로 채워지면서 진행되었다. 정부도 이에 가세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보수세력의 노력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국제화가 정부에 의해 화두로 제시되었다. 이 국제화는 작년 하반기에는 세계화라는 보다 공세적인 용어로 바뀌었지만, 이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권력과 자본은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노동법개정을 기다리는 노동자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초기에 진압한다는 방침 아래 94년도에는 여하한 쟁의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다. 철도민주화를 위한 전기협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농성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도, 대우기전,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의 파업에도 공권력은 여지없이 투입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변화를 권고(특히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해)했지만, 그것에는 아랑곳 없었다.

94년 한해에도 주한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끊이지 않았다. 한남동 세모녀 사건, 아리랑택시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한국인에 대한 폭행과 감금은 계속되었지만, 한국정부의 저자세는 사라지지 않았다. 93년 동두천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윤금이씨의 사건 이후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불평등 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

지는 이런 운동세력의 노력은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 당국이 한국 경찰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미 국무부의 「94년 세계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최대의 장애물」로 적절하게 지적되었듯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규정짓는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신공안정국에서 자세히 다름).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과거의 인권문제가 다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닥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인권단체들은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어머니회를 초청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꾸준히 과거의 인권문제 청산을 요구했지만, 과거의 군사정권과 손잡아 탄생한 정권의 속성상 과거에 대한 확실한 청산은 어렵다는 점만 확인되었다. 이후 있게 될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이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다.

94년 인권운동에서 기억할 일은 인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간단체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A규약) 반박보고서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 A규약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민간단체로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와 더불어 95년 3월 있었던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삶의 질」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단초를 마련했다. 민간단체들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정부도 점차 세계화라는 화두와 더불어 「삶의 질」의 문제를 선언적이나마 떠들게 되었고, 이런 점들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국민들 속에 삶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결과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이를 힘으로 인권운동이 국민들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바람직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간략한 정도의 개괄로는 1994년의 인권상황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 보다 본격적인 94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지난해의 인권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신공안정국에 대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네 국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가름한다.

(2) 「신공안정국」과 「주사파사냥」

「신공안정국」은 1994년 한국 인권상황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은 1994년 한국의 자화상이다.

「신공안정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개국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국면 (전주곡)

벌목공문제가 회오리를 일으키던 국면이며 이 기간은 「신공안정국」의 전주곡 내지 준비과정에 해당된다고 할만하다.

「벌목공」이 보수회귀의 신호탄임을 여러 사람이 느끼고 있었으며 그런 조짐은 분명히 있었다. 이회창 총리 후임으로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해온 이영덕 부총리가 임명되었고 안기부가 2월 쯤부터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정보사찰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3월에는 서중석 교수의 교과서 개편안 중 「10월항쟁」·「4·3항쟁」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아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서교수를 공격했다. (이런 「이념시비」는 곧 이어 리영희교수, 그리고 나중에는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를 표적으로 삼게

된다.) ‘일빛’ ‘힘’ ‘우라네 일터’ 등 출판인들이 6공시절에 소위 ‘이념서적’을 출판했던 죄로 새삼스럽게 줄줄이 연행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불길한 조짐이었다.

아마도 남북관계와 내정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별목공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4월 중순 무렵부터 정부 곳곳에서 보수화 경향이 눈에 띠기 시작한다. 대검 공안부는 4월 20일 노동부·상공자원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에 침투한 좌경세력 색출” 방침을 정했다. 보수우익언론들이 별목공문제를 마구 부풀리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냉전수구세력이 서서히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면이 없었더라면 ‘신공안정국’은 생겨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국면 (개막)

6월 7일의 한총련 출범식부터 ‘신공안정국’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고 한달 내내 일어난 급작한 사건들은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사태로 엄청난 구속자를 낸다. 6월 한달동안에 전국은 ‘신공안’의 회오리 속에 휩쓸려갔다.

한총련이 출범식에서 김영삼정권 타도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한총련 간부 90명에게 검거령이 내려졌고 10명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국전위사건’이 신문 1면을 장식할 무렵 ‘UR비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한 남총련 학생 5백59명의 ‘열차 정차’와 홍익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 의한 ‘전경 54명 납치’는 보수언론의 좋은 ‘밥’이 되고 연행 3백96명, 구속 1백19명, 기소 58명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한총련 출범식, 홍익대사건, UR비준 반대시위 등과 관련 10여개 대학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5백명 가량이 연행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23일,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번시간에 합법적으로 농성하던 전기협 노동자 6백13명이 강제연행 되었으며 파업선언 후에 기독교회관에 집결한 약 3백50명의 노동자도 강제연행되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무려 3천명에 이르는 징계처분이라는 결과로 끝났고 대우기전(20일, 21일), 한진중공업(27일), 금호타이어(25일) 파업현장에도 대규모 진압병력이 투입되었다.

6월 한달동안에 정식으로 구속된 인원은 2백15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김영삼정권이 출범한 후 1년동안의 총 구속자수 2백22명과 거의 맞먹는 놀라운 수이다. (한편 1994년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달 동안의 시국·공안사건 구속자수는 4백12명으로서 이것은 그 이전 1년간 구속자 2백22명의 두배에 이른다.)

이 국면에서 언론은 시위·농성자들을 ‘폭력’, ‘좌경’, ‘불법’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했으며, 정권은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외면한 채 고의로 사태를 파국으로 유도함으로써 그 책임을 시위·농성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에서 받았다.

셋째국면 (마녀사냥)

7월 8일의 김일성주석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조문파동’이 일어나 사태는 ‘주사파 사냥’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그때까지는 별 무리없이 사용해왔던 ‘주석’이라는 직함을 붙이는 일 마저도 이제는 ‘주사파’의 징표가 되었다. 18일 박홍 총장의 발언으로 ‘주사파 사냥’은 광기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 날부터 시작하는 1994년판 ‘박홍 시리즈’는 대략 아래와 같다.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 사노맹 뒤에는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 “우르과이라운드 비준반대는 북의 지시”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7월 18일)

“운동권 핵심은 밀입북 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에 남한에서 온 팩시가 쌓여 있다.” “대학 내에 유사시 요인 암살 등을 위한 테러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조직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인계까지 동원” “공산당 가입학생 수는 200~300명선” (7월 19일)

“북한이 한국 학생들을 초대하고 장학금을 준다. 그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교수가 된 예” (8월 2일)

“일부 야당, 종교계, 언론계에 주사파가 7백50명 가량 암약” (8월 11일)

언론은 “박홍 총장의 진정한 용기와 소신”에 야단스러운 찬사를 보냈으며 교수들은 지지성명을 보냈다. 공안검찰은 박홍발언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침을 국가기관에 보냈다.

박홍 발언이 있던 18일, 전국 경찰은 김일성 주석 분향소 설치와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한총련 학생 1백40명에 대한 긴급 검거령을 내렸고 그 다음 날에는 1백81개 대학 주변에 2백33개 중대 27,000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8개 대학에 병력을 투입했다. 7월 25일에는 이영덕 국무총리의 주사파 강경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고 29일에는 대검찰청이 대학 내 주사파 집중검거·전원구속 방침을 밝힌다. 그 시점에서 모든 공안사건 피의자는 ‘주사파’였다.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은 물론 몇년 전에 사노맹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트로츠키주의자들(IS)에게도 ‘주사파’의 상표가 붙었다. ‘주사파’는 이제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막연한 그러나 강력한 공포의 상징이자 종오의 상징이었다. 오랫동안 애용되어온 ‘간첩’이라는 상징 대신에 참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상징이 등장한 것이다. 이 공포정치의 도구 앞에서 ‘민주시민’들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시작(8월 2일)은 바로 이 광기의 절정에 위치한다. 그러나 아무리 온 국민이 광적인 공안정국 속에서 얼어붙어 있다 해도 이것은 원래 공안당국의 무리수였다. 보기 드물게 인기가 있고 모범적인 강좌가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자 대학당국이 기겁을 하여 이를 폐강시켜버린 반면 교재를 집필한 9명의 교수들은 농성을 하면서 언론의 악선전 속에서 장기간 치열하게 맞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8월 19일 검찰은 박홍총장의 주사파 관련 발언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이어서 수사의 단서로 삼기 어렵다고 발표함으로써 집단 광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산지방법원 창원지원은 경상대 장상환·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리하여 ‘신공안정국’의 분수령을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국면, 특히 8월의 ‘주사파 사냥’은 6월의 상황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즉 6월의 양상이 어쨌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량검거·무더기 구속이라는 양상이었는데 대해 8월의 양상은 과거의 행위를 문제 삼은 꾸준한 소규모 검거라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별목공’, ‘신공안정국’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지를 회복한 공안세력이 내친 김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마저 문제 삼으면서 진보진영의 씨를 말리려고 혹은 말릴 가능성을 가늠해보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충분히 성공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냉전수구세력들에게 손해는 없다. 주목할 것은 ‘사상 감정기관’으로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더불어 유명해진 공안문제연구소는 89년 이후 2만1천건의 문서를 감정하여 그 중 1천4백여건을 ‘좌익·옹공’으로 분류해놓았다. 이

중 수사가 끝난 것은 '수백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앞으로 1만3천여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는 것이다.

넷째국면 (종장)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8월 31일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신공안정국'은 종장으로 향한다. 물론 사건은 계속된다.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사건, 청소년잡지 『새날열기』 사건, 성남지역 노동자회사 사건, 부천 한누리노동청년회사 사건… 그리고 10월 초의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 연행사건은 마지막 불꽃이었다. 정현백 교수는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 큰 상처를 입으면서 "북한 장학금 교수" 설을 잠재웠고 긴급구속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보수언론의 무책임함을 일정하게 제기했다.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의 납치 관행에 합법의 옷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이 긴급구속장 제도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발부할 수가 있으나 다만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조건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판사로부터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긴급구속장을 발부하고 체포만 해오면 48시간 후에 판사로부터 기각 당할 때까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초부터 8월 말까지 긴급구속건수가 4만2천건을 넘었으나 이 중 판사가 사후 영장을 발급한 건수는 1만3천7백50건(32.5%)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3만건 가까운 사건 피의자들은 억울하게 구속 당했다가 풀려났다는 결론이다. 이 못된 나라의 못된 관행에 국민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공안당국을 끌고 다니면서 '신공안정국'을 주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언론이었다. 증거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다. 윤리를 지키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선정과 보수만 있으면 '장땡'이었다. 타사와의 판매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1면 톱기사에 군에 입대한 주사파 학생들이 국군의 지휘계통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60만 대군을 1천5백명 사병이 와해시킨다" 따위 제목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달곤 했다. '신공안정국' 과정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사실, 그것은 언론이 이제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확고한 권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뒤이어 마구잡이로 터지기 시작하는 공직사회의 대형 부정사건, '지존파' 등 초강력 범죄, 성수대교 붕괴 등등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묻혀가면서 사실상 완전히 복권된 공안세력에 의해 여유있게 유지되는 완만한 공안국면을 뒤에 남긴 채 종식된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

차례